KISA 안내•해설 제 2010-38호

#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2010.1



# 사업자를 위한 불법 스팸 방지 안내서

2010. 1.





# 제·개정 이력

순번	제·개정일	변경내용	발간팀	연락처
1	2006. 3.	제 정	스팸대응팀	405-4781
2	2008. 9.	개 정	스팸대응팀	405-4781

#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안) (요약)

#### 제1장 개요

I. 스팸 일반

#### 제2장 불법 스팸 방지 조치

- 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준수 사항
- 1.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제한
- o 통신사는 이용자가 스팸전송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1개월) 또는 계약해지 (계약해지자 정보는 1년간 보유하여 재가입 금지)
- 2.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 o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스팸전송 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 (1개월 이내) 또는 계약해지(1년간 재가입 금지)
- 3~4.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 o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실조사를 위해 통신사에 스팸전송자 정보제공 요청
- 5.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6.22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강화(과태료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30일 이내 감치 등)
- 6. 기타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
- o SMS 일일 전송량 제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 Ⅱ. 광고 전송자 준수 사항

- 1.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 전송(Opt-in)
- o 통신판매업자의 옵트인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기존거래관계를 통해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제한(6개월 이내)
-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Opt-out)
- o 광고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 Ⅲ. 광고 위탁 등을 하게 한 자 준수 사항

o 광고 위탁자 등 스팸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와 동일하게 과태료 처벌

# <제목 차례>

제1장 개요1
I. 스팸 일반 ···································
1. 스팸 정의
2. 스팸 유형 2
가. 전송유형별 분류 ···································
제2장 불법스팸 방지조치5
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5
1.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5
가. 개요       5         나.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절차       6         다.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범위       7         라. 이용정지 사유       7         마. 계약해지 사유       8         바. 해지 후 재가입 금지       8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및
가. 개요
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
- P. 궁건적휴의비스 약중세약 표정 """""""""  11

	3.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 13
	가. 개요 ···································	· 13
	4. 사업장 출입·검사 ···································	.5
	가. 개요 ···································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18
	가. 개요 ···································	
	6. 사업자 자율규제	· 19
	가. 스팸방지 표준이용약관 도입 나. SMS 일일 발송량 제한 및 불완료호 차단 다. 서비스 계약 시 본인확인 라. 불법행위 사후 모니터링 등 마. 기 타	· 19 · 20 · 20
П	[. 광고전송자	22
	1.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 22
	가. 개요 ···································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 30
	가. 준수사항	30

3. 기타 매체
가. 게시판
4. 공통 준수 사항
가. 청소년 보호 ···································
Ⅲ. 광고전송의 위탁 또는 하게 한 자 38
1. 광고전송 위탁 행위
<표 차례>
[ 표 1-1 ] 이메일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부록 및 참고 자료〉
[부록 1] (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항 표
[참고 1]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55 [참고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59

# 제1장 개요

# I. 스팸 일반

# 1. 스팸 정의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다.

□ 원하지 않음(unwanted) 또는 요청하지 않음(unsolicited)

스팸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팸의 최종 목적지인 수신자 입장에서 스팸을 판별하는 가장 기본 요소 로, 전송자와 수신자 사이의 어떤 사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 □ 상업성(Commercial)

전송되는 정보의 내용이 상업성을 띄고 있다면 이 또한 스팸을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수신자가 원하는 상업성 정보도 있기 때문에 상업성이라는 요소가 스팸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다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비영리정보보다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이 되는 사례가 많다.

#### □ 대량성(Bulk)

스팸의 또 하나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대량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망 환경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대량 전송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만 또는 수백만통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전송뿐 아니라 이메일주소 등수신자 연락처 수집·생성이 모두 자동화됨으로써 대량 스팸전송이 더욱용이하게 되었다. 대량의 스팸은 네트워크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차단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 □ 기타 특징

스팸은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전송자의 신원을 숨기고 반사회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불쾌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다. 또한 대부분의 스팸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판매된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달되고 있다.

# 2. 스팸 유형

## 가. 전송유형별 분류

스팸의 전송 유형은 크게 이메일스팸과 휴대전화 스팸으로 구분이 되며, 기타 팩스, 게시판 스팸 등으로 분류된다.

이메일, 팩스, 메신저, 팝업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스팸과 달리 휴대전 화는 다양한 전송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크게 음성스팸과 문자스팸으로 구분된다.

음성스팸의 유형으로는 원링스팸, 녹음된 음성스팸(ACS 또는 ARS), 육성으로 전송하는 스팸(TM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문자스팸의 유형으로는 SMS, URL-SMS, MMS를 이용한 스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음성스팸

원링스팸은 벨이 한두 번 울린 후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 발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음성스팸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060 또는 무선 인터넷 등 과금이 발생하는 특수번호를 직접 남기는 방식과 이동전화 번 호나 일반번호를 남긴 후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녹음된 음성으로 광고내 용과 함께 특수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 있다.

녹음된 음성스팸은 수신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일방적으로 녹음된 음성 광고를 전송하는 유형으로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전용선 등에 자동호출 장치(ACS) 또는 자동녹음장치(ARS)를 설치하여 광고내용을 전송하는 음성스팪이다.

육성스팸은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텔레마케팅(TM)이 대표적이며, TM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 판매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사전수신동의 예외사항이다.

#### □ 문자스팸

SMS(Short Message Service) 스팸¹)은 휴대전화에 '오빠, 전화줘' 등의 문자를 남겨 광고가 아닌 사적인 메시지로 위장하고 회신번호란에 이동전화 번호를 남기는 형식의 스팸이다.

URL-SMS 스팸은 회신번호란에 Call-back URL을 입력하여 수신자가 통화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어 해당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스팸이다.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스팸<sup>2)</sup>은 회신번호란에 개인 이동 전화번호 입력 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을 유도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sup>1)</sup>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단문 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sup>2)</sup>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사진, 동영상,음악,그림,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함

광고메시지(광고성 사진, 동영상, 음악, 그림, 이미지 등이 나오거나, 전화가 연결되어 MMS를 보낸 사업자 및 이용할 서비스에 대한 ARS 광고가나옴)를 전송하는 스팸이다.

#### 나. 콘텐츠별 분류

이메일 및 휴대전화 이용자 대상으로 수신한 스팸의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대략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성인물, 대출·금융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스팸으로는 주로 대리운전, 기획부동산 등의 스팸이 가장 많다.

[ 표 1-1 ] 이메일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구 분	일반광고	성인광고	대출광고	합 계
2006년	2.0통(37.7%)	0.2통(3.8%)	3.1통(58.5%)	5.3통
2007년	3.0통(69.8%)	0.3통(7.0%)	1.0통(23.2%)	4.3통

※ 일반광고 : 신상품 광고, 이벤트 참여 광고 등

[ 표 1-2 ] 휴대전화 스팸의 콘텐츠별 구분

구 분	일반광고	성인광고	대출광고	합 계
2006년	0.17통(4.0%)	0.11통(72.7%)	0.19통(23.3%)	0.47통
2007년	0.17통(30%)	0.13통(23%)	0.27통(47%)	0.57통

※ 일반광고 : 신상품 광고, 이벤트 참여 광고 등

# 제2장 불법스팸 방지 조치

# 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3)

#### 1.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 려야 한다.

####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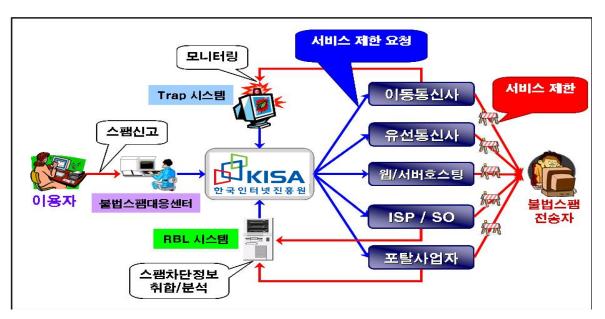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광고 전송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광고 전송을 중계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스팸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전송 중계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 자율규제 영역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약관상에 어떤 경우에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시한 후 조치할 수 있다.

<sup>3) ·</sup>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sup>·</sup>특히, 스팸과 관련하여서는 광고전송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네트워크나 호스팅 등)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나.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절차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과 관련하여 전송 중계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상황으로 i) 광고 전송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ii) 이용자가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iii) 이용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개념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건 또는 Trap 등을 이용하여 자체 적발한 건 중 법 위반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한 건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
-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위탁)이 선별된 건에 대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
- ③ 이용제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필요조치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치결과 통보

#### 다.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범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전송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특정서비스에만 국한될 수도 있다.

전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해당 전송자가 신청한 모든 서비스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거나 불법에 악용된 특정서비스만 식별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 라. 이용정지 사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은 사항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에 통지할 수 있다.

불완료호(원링)를 남김으로써 수신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스팸전송자의 해당번호는 이용정지 기간 등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 마. 계약해지 사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 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다.

#### 바. 해지 후 재가입 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재가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위해 자사 약관·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재가입을 금지하는 기간 동안 스팸전송에 사용된 휴대전화 외에 계약자가 보편적 역무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유선 1회선은 허용하되, 만일 동일 계약자에 의해 스팸이 계속 발생되면 허용했던 휴대전화와 유선 1회선도 차단할 수 있다.

※ 불법스팸전송으로 이용정지, 계약해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 신망법 개정 추진

####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 가. 개요

-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08년 3월 22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법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이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 o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부의 법적 규제에 앞서 업계 자율로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나. 통신과금서비스의 정의

o 통신과금서비스란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또는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에서 설명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대상 판단기준

- o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스팸신고건에 대하여 사전 수신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신고건 중 확인된 적법광고의 비율에 따라 해당 CP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정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면하게 되는 적법광고 비율의 기준은 신고오류나 번호이동과 같이 신고건에 대한 적법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과 시장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스팸량의 증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o 적법광고는 광고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득하였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내역이 존재하는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광고를 말한다.
  - 사전 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CP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 o 이용자를 기망 또는 부당하게 유인하여 동의를 득하였거나, 광고수신 여부와 관계없는 단순 회원가입은 불인정
  - 수신동의를 획득한 시점에서의 사업자명과 제공 컨텐츠 유형이 변경된 경우, 당해 수신동의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동의자 정보(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동의일자(년/월/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휴대전화 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자 정보가 없어도 인정
- o 옵트인 여부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KISA의 별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증하며, 이 때 입증책임은 당해 CP에게 있음
  - DB 공유, 허위내용 작성 등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금취소 및 계약해지 조치

#### 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또는 음성정보서비스(060) 관련 스팸신고 정보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다.
-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스팸신고건에 대하여 해당 CP를 파악하고, 신고인별로 과거 6개월간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발생 이력을 조회하여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보한다.
  - ※ 망개방 무선인터넷 관련 스팸신고건의 경우, 과금검증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KTOA)가 총괄하여 과거 과금내역을 확인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거 과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스팸신고건을 다시 해당 CP에 제공한다.
- ④ CP는 스팸신고인별로 광고수신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및 관련자료를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보한다.
-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거 과금내역 및 사전 동의 여부 확인결과를 토대로 전체 스팸신고건 중 적법광고의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다.
-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판단결과를 토대로 내부지 침 및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24 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보한다.

#### 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유형

- o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과금취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스팸신고건 중

적법광고로 판명된 것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된 스팸의 수신일자에 발생한 당해 CP의 과금을 모두 취소처리 할수 있다.

- ② 이용정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스팸신고건 중 적법광고로 판명된 것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 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1개월 이내에서 해당 CP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계약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스팸신고건 중 적법광고로 판명된 것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거나, 또는 이용정지 조치 이 후 1년 이내에 다시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는 해당 CP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 3.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제64조 (자료제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 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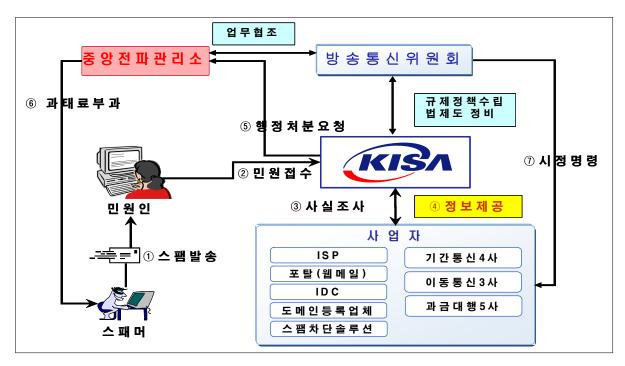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려는 선량한 광고 전송자가 아닌 스팸 전송자는 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러한 악성 스팸 전송자를 찾아내 최종적으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보유한 스팸 전송자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스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계약 시 이용자의 연락처 등 인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절차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4)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 관련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up>4)</sup>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개념도>

#### 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절차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건 또는 Trap 등을 이용하여 자체 적발한 건을 사실조사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통해 스팸 전송자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을 선별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는 선별된 건에 대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의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 필요한 조치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료제출 시 해당번호, 도메인 등록자(해당 URL 소유주)에 대한 정보 외에 해당번호와 URL 이 착신 전환되거나 Forwarding 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 공하여야 한다.

#### 라. 이용자의 최신정보 갱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스팸 전송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등이 불충분한 자료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보다 철저한 회원정보(비회원 이용자 포함) 관리가 요구되며, 회원의 최신 정보를 갱신·유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장 출입·검사

#### 제64조(자료제출 등)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5)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가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현황 및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sup>5)</sup>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인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참조

#### 나. 사업장 출입·검사 절차

사업장 출입·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는 검사 개시 7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검사내용 등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
  -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② 검사자는 검사권한의 증표 및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검사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계인에게 문서로 제출
- ③ 관련 장부·서류 검토, 시스템 모니터링, 관계자 인터뷰 등 검사 실시
- ④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시정권고

# 사업장 출입·검사 계획 통지서 양식

1. 대상       2. 관련 근거       3. 일시       4. 검사자
3. 일시
4. 검사자
5. 검사 사유
5. 검사 사ㅠ
6. 검사 내용

2008. 9.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인

※ 통지서 양식 외 대외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76조 (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가. 개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이를 하게 한 자(광고주·위탁자)는 3천만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내용

자진 납부자는 과태료를 감경해 주고, 체납자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된 체납금을 미납할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행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과태료를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법원이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30일 이내에서 감치 가능하고, 체납자는 감치 후에도 여전 히 해당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 표 1-3 ]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현황

구 분	현 행	개 선('08.6.22시행)
행정처분 절차	o 이의제기 접수기간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o 이의제기 접수 후 지체 없이 법원이송	o 이의제기 접수기간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o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 법원이송
과태료 부과징수	o 과태료 체납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없음	o 과태료 체납자 - 가산금 5% - 중가산금 월1.2% 5년간
	o 세무서 등 공공기관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법률규정 없음	
		o 주무관청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사업 정지 및 허가 등의 취소가능
기타사항		o 신용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제공가능
		o 법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30일내에 서 감치 가능

# 6. 사업자 자율규제

#### 가. 스팸방지 표준이용약관 도입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의 목적 외 이용행위 금지, 각종 불법행위 이용 시 서비스 제한(서비스 해지 포함) 실시 및 관계 기관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이용약관<sup>6)</sup>을 도입하여야 한다.

#### 나. SMS 일일 발송량 제한 및 불완료호 차단

통신사, SMS 발송대행사, 포털사업자 등 SMS 전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계약자(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당 또는 회원ID당 SMS 전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다.

<sup>6)</sup> 표준약관 예시는 [부록 3] 참조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SMS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계약자에게 SMS 발송 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 할 수 있음을 안내 메시지, 팝업 창 등을 통해 계약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1일 1천통 이상 SMS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 등 사업자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7)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다. 서비스 계약 시 본인확인

사업자는 서비스 계약 시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 강화 및 제출한 연락처로 회신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 불법행위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자는 최초 등록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예 : 증권 정보서비스를 위해 등록한 060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성인채팅에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sup>7)</sup> 광고전송자가 고의적으로 전화벨을 한번만 울리고 끊는 변형적인 스팸 전송행위를 지칭함

사업자는 스팸전송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 대한 스팸방지 교육 및 주기 적 회원정보 갱신·관리를 한다.

- 스팸전송으로 신고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 스팸발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
  - ※ 다량 착신전환 이용자, DOD/DID 이용자, 다량 도메인 등록자<sup>8)</sup> 등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다량 신청한 후 제3자에게 재부여하는 자 등

이용자가 원할 경우 특정 식별자에 대한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현재 이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060 문자 및 음성 차단 서비스' 참고

자사 또는 타사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자체 고충처리센터를 운영 하여야 한다.

#### 마. 기타

사업자 자율적인 스팸방지를 위해서는 스팸방지 성공사례 공유 및 SPF<sup>9)</sup>, RBL<sup>10)</sup>, White 도메인, OP(Outbound Port) 25 등 필요기술 등을 채택<sup>11)</sup> 하는 것이 필요하다.

<sup>8)</sup> 특히, 도메인이 스팸전송에 남용될 경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규약 3.7.7.9 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해당 도메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sup>9)</sup> Sender Policy Framework : 메일서버정보를 사전에 공개 등록함으로써 수신자로 하여금 이메일 발송자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기술

<sup>10)</sup> Real-time Blocking List : 스팸차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의 스팸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 분석하고 스팸발송 IP, 도메인 정보 등을 추출하여 정리한 목록

<sup>11) 2004. 6</sup>월, 미국에서는 MS, 야후, AOL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심으로 ASTA(Anti-Spam Technical Alliance)라는 기술연맹을 만들어 스팸방지정책 및 스팸에 효과가 있는 기술을 공동 도입한 바 있음

## Ⅱ. 광고전송자

#### 1.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 가. 개요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지난 2005. 3. 3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Opt-in' 규제를 받고 있다.

'Opt-in' 규제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규제사항이며, 이외에도 광고 전송할 때에 법적 표기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광고에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전송이 금지되는 점은이메일 등 타 매체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하다.

#### 나. 준수사항

#### □ 사전 수신동의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 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 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의 제2호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스팸을 전송하는 등 사전 동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왔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광고 전송에 대하여는 공정 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에 의한 '전화권유(TM)'만을 제외하고 모든 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 □ 기존 거래관계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 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기존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광고 수신일을 기점으로 과거 6개월 이내만 인정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는 기존거래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 하여야 한다.

#### □ 수신동의 철회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 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 □ 광고전송 허용시간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 □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은 다음의 위치에 명시한다.

▶ SMS 및 MMS 광고 : 본문 시작부분에 명시

▶ 음성광고 : 광고내용 시작 전에 안내

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 약칭을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 별하기 어렵다면 올바른 전송자 명칭 표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신자가 업체명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라면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상위 업체명(예 : 이통사)을 병행 표기한다.

- ▶ 단순 SMS 광고
-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 시 : 회신번호란('from')에 입력
- ·060 특수번호 홍보 시 : 본문 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 회신번호란에는 060 특수번호 및 URL 등 과금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여 만약의 직과금 분쟁소지를 예방한다.
- ▶ URL-SMS 및 MMS 광고
- ·본문 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 회신번호란에는 080 등 수신거부번호 입력
- ▶ 음성광고 : 전송자 명칭에 이어 안내

수신동의를 얻은 후 광고를 전송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 안에 손쉬운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본문 끝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③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 □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 □ SMS 및 MMS 광고
  - o 단순 SMS

(주)△△△

(광고메시지)

<u>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철회)</u>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u>02-405-4114</u> <u>또는 15xy-xxxx, 16xy-yyyy</u>

<일반 제품 홍보 시>

o URL-SMS 및 MMS

무선인터넷명(내부 CP일경우 이통 사명과 내부CP명을 같이 명기) 02-405-4114

(광고메시지)

회신번호(from) : <u>수신거부(또는</u> <u>수신동의철회)080-XXX-YYYY</u> 등 <u>(주)○○○ 02-405-4114</u>

(광고메시지)

<u>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철회)</u>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u>060-xxx-yyyy</u> **※ 과금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호삽입을 자제** 

<060 식별번호 홍보 시>

※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통일된 하나의 번호만 기재 가능하나,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이 되는 번호이어야 하며 요금도 수신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 □ 음성광고(ARS 등)

발신번호는 실제 광고전화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음성광고내용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 XXX(사람이름)입니다. 이 광고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전화번호 02 405 4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내용)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 1번을 눌러주십시오(또는 080 xxx yyy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통일된 하나의 번호만 기재 가능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 XXX(사람이름)입니다.

(광고내용)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1번을,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번을 눌러주십시오(또는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80 xxx yyy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12)를 이용한 광고전송

# 가. 준수 사항

# □ 광고전송시 표기사항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자우편 광고인 경우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 ※ (광@고) (광 고) (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 수신거부방법은 메일 본문 안에 회신할 전송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sup>12)</sup>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든 매체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된다.

\*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실시간 또는 1일단위로 확인하여 다음번 광고부터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이메일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 등 웹 메일서비스 계정을 등록(생성)하여서는 안된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 예시]

### o 전송자 신원 은폐 기술

- 오픈릴레이 및 프락시 이용, 좀비 감염, 메일헤더정보 및 SMTP정보 조작 등

#### o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회피 기술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기재하였으나 고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가 아닌 타인이 수신하도록 설정 등

### o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는 기술

- 이메일 ID로 많이 활용되는 영어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이메일주소를 생성해내는 기술

#### o 다수의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 스팸 전송에 사용될 이메일주소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반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기술

# □ 이메일 주소 자동수집·유통·이용 제한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 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메일 주소추출기와 같은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된다.

#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및 방지기술 원리]

#### o 자동 수집 기술

-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올릴 때 회신할 연락처로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스팸 전송자들이 이렇게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식별·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활용하고 있음
- 모든 전자우편주소는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자우편주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은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HTML소스에서 '@'가 붙은 단어를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o 수집 방지 기술

- 대표적인 기술로 '@'를 text로써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과 아예 웹상에 전자우편주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문자 등으로 가려놓은 후 사람여부를 식별하여 공개하는 방법 등이 있음
  -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02.12. 이메일주소 수집방지 프로그램인 '네버스팸 (NeverSpam)'을 개발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co.kr)를 통해 무료로 보급중임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 □ 광고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메일

보낸 사람	mr1234@xxxxx.com
받는 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광고)화장품 광고@
보낸 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귀하의 메일주소는 0000년 0월 0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u>여기「수신거부」</u>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u>click here.</u>)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02-xxx-xxxx

이메일: webmaster@○○○.com

# □ 광고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메일

	보낸 사람	mr1234@xxxxx.com
	받는 사람	miss567@xxxxxx.co.kr
Ī	제 목	(동의)화장품 광고
	보낸 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 [		

○○○님은 xxxx년xx월xx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xx월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u>여기「수신거부」</u>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webmaster@〇〇〇.com

# □ 광고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성인)에게 보내는 성인광고메일

※ 법률 제42조의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성인광고)'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보낸 사람	mr1234@xxxxx.com
받는 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성인광고)성인용품 광고@
보낸 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귀하의 메일주소는 0000년 0월 0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담당자:○○○ 이메일: webmaster@○○○.com

# □ 광고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성인)에게 보내는 성인광고메일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보낸 사람	mr1234@xxxxx.com
받는 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동의)성인용품 광고
보낸 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이님은 xxxx년xx월xx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xx월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webmaster@〇〇〇.com

## 3. 기타 매체

스팸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점점 광고 '전송'이 아닌 기타 행위('게시'나 '설치')에 대해서도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가. 게시판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게시하거나 게시판 자동등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게시행위는 금지된다.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전송매체와 달리 게시판에서는 거부의사를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게시판에 일괄 게시할 수 있다.

### [이메일 광고와 게시판 광고의 성격 및 규제 내용 비교]

	이메일 광고	게시판 광고
전달 형태	광고성 정보 '전송'	광고성 정보 '게시'
매개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게시판 이용자
공개 여부	비공개 (수신자의 개인 메일함으로 수신)	공개 (해당 게시판 방문자는 모두 열람 가능)
주 피해 주체	수신자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광고) 표기 의무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 재전송 금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게시거부 의사 표시 이후 게시금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삭제조치
규제방식 차이의 근거	·수신자가 1차 광고를 수신한 후에만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 에게 전달할 수 있음 ·즉, 전송자의 1차 광고권리가 보장됨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일괄적 으로 게시판 페이지에 모든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 광고게시도 원천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효과를 나타내게 됨

## 나. 애드웨어(Adware)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 야 한다.

# □ 준수사항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PC에 팝업 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등의 광고성 프로그램(애드웨어 (Adware)등)의 설치 역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광고성 프로그램을 이용자 PC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전에 이용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고지한 후 설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PC에 설치될 프로그램이 광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 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전에 식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단순히 모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운용체제(Operating System)가 자동으로 띄우는 경고창의 문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였다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4. 공통 준수 사항

## 가. 청소년 보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할 수 없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 o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유해매체물 검색」서비스(http://www.youth.go.kr/environment/default\_retrieval.htm)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 o 확인방법 : 실명인증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또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수 없다.

## 나. 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 광고전송 금지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박, 음란물, 마약 등 정보통신망법이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 Ⅲ. 광고전송의 위탁 또는 하게 한 자

## 1. 광고전송 위탁 행위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 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개요

온라인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1차 법적 책임을 지는 '전송자'는 대행사가 될 것이지만, '위탁자(광고주)' 또한 대행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 준수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 안에 '대행업체가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한다'는 내용 및 '위반 시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한다.

또한, 대행업체가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행업체에 광고를 위탁한 경우 이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광고를 위탁한 자는 해당 대행업체를 자사의 소속 직원으로 봄으로써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 광고를 하게 한 행위

제7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해당 행위를 직접 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광고전송 위탁자뿐만 아니라 스팸전송을 통해 직·간접적 으로 관여하는 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받은 자의 의미는 광고주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당해 광고전 송행위만을 위탁받은 자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제76조1항의 '불법 광고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한자'는 영업상 이 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조장, 유도, 공모하는 자로 해석한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은 위탁행위에 한정하여 관리·감독 책임(처벌 규정은 없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놓은 것이며, 제76조는 위탁자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광고 전송행위를 중심으로 한 업무상 계약관계에만 의거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는 제50조의3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

# [부록 1] (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항 표

፠ '08.6.13 개정

조문	규제내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의 제한					
제50조1항	-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			
	-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제50조2항	※1. 사전 거래 관계자 제외 2. 통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사업자 제외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3항	- 오후9시~아침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4항	- 광고 시 표기의무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5항	- 광고 시 표기의무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6항	-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방해 기술 금지 - 전화번호, 우편주소를 자동생성 기술 금지 -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금지 - 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 (전송지 위작·변작 경우)	전체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제50조7항	- 수신거부 시 금전적 비용 수신자부담 금지	전체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2의1항	- 운영자 동의 없는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금지					
제50조의2의2항	- 1항 위반한 전자우편주소 판매, 유통 금지	이메일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제50조의2의3항	- 1,2항 위반 전자우편주소 이용 금지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3의1항	- 광고전송 위탁 시 관리, 감독 의무	전체				
제50조의3의2항	- 손해 배상책임 시 위탁받은 자 소속직원으로 간주	전세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4의1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역무제공 거부 ·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 수신자가 거부할 시 · 불법스팸 전송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50조의4의2항	- 역무제공 거부 내용 이용약관에 포함	제공자				
제50조의4의3항	- 역무제공 거부 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의무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원	등의 설치				
	- 설치 전 동의 의무 및 용도/삭제방법 등 고지의무	애드웨어	3천만원 과태료			

조문	규제내용	대상	처벌내용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	프트웨어 등 보급	1	
제50조의6의1항	- 정통부위원장의 스팸차단 및 신고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50조의6의2항	- 동 SW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지원	방통위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l의 제한		
제50조의7의1항	- 홈피 운영자 거부의사에 반하는 게시 금지	2011.00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의7의2항	- 위반 시 운영자는 삭제 조치	게시판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 금지	1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제61조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	2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제64조	자료제출 등			
제64조1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64조2항	-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용기간 등 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	정보통신서비	1천만원 과태료	
제64조3항	- 사업장 출입하여 업무현황, 장부 및 서류 검사	스제공자등		
제64조4항	- 시정조치 명령			
제64조5항	- 검사개시 전 사업자에게 7일전 통보, 긴급 시 선 조치 가능			
제64조6항	- 검사목적 출입 시 증표 및 성명, 시간, 목적 문 서 교부	방통위		
제64조7항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위해 인터넷진흥원에 필요지원 요청			
제65조	권한의 위임 위탁			
65조1항	- 소속 기관장에게 일부 및 전부를 위임			
제65조2항	- 13조는 전산원에 위탁			
제65조3항	- 55조1항,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	방통위		
제65조4항	- 55조6항을 56조3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직원에 준용			
제76조	과태료			
제76조1항	- 광고성 정보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전체	3천만원 과태료	

# [부록 2]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

※ 2008. 6. 13 개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 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 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 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청소년보호법」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12.21]

제64조 (자료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 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 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 불법스팸 전송자 과태료 부과·징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토록 법률 개정 예정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 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제7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 히 자
-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6.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7.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8.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 또는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 9.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 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
-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6.13]

# [부록 3] (개정) 스팸방지 사업자 표준약관

# (개정)스팸방지 사업자 표준약관 예시

- 제1조(용어 정의) ①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①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②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 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 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③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5조(이용정지) ①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 우
  - 2.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해지)** ①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수 있습니다.
- 제7조(SMS 발송량 제한) 회사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당 SMS 전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제8조(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④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기존거래관계 기간제한) 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제11조 (불법스팸 부당과금 제한)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 1. 과금취소: 일정기준 이상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된 스팸의 수신 일자에 발생한 당해 CP의 과금을 모두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기준에 관계없이 스팸 수신일 이후 발생한 과금을 별도로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정지 : 일정기준 이상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CP에 대해서는 일정기간(1주 또는 1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해지 :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위반정도가 중하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용 정지된 이력이 있는 CP에 대해서는 곧바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 4. 재계약 금지 :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CP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향후 1년간 통신과금서비스제공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과금을 유발한 CP에 대하여 위반정 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록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 · 이용계약체결 시 이용자 신원확인 강화 및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최신정 보를 갱신하도록 노력한다.
- · 자체 스팸전송자 list를 관리함으로써 악성스패머의 경우 신규 서비스 가입을 약관에 정한 기간 동안 제한한다.
- · 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약에 따라 경고, 이용정지, 서비스 해지 등 자율규제하고, 민원인이 요청하고 해당 민원건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일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 · 특수목적의 서비스 제공 계약 시에는 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불법적인 서비스를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에 의거한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 · 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년. 다만, 이중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는 6월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 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 · 모든 도메인 네임 등록자 및 호스트는 이메일 전송 경로 인증을 위해 각자의 도메 인 네임 서버(DNS)에 SPF(Sender Policy Framework)를 출판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포트 25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필요하다면 호스트 및 제공자 네트워크로 한정하여 포트 25를 통하여 이메일 송, 수신을 허용한다. 이용자가 이를 꼭 이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포트 25 사용이 허가되어야 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스팸차단리 스트(RBL)', 화이트도메인을 수신 메일서버에 적용하여 스팸을 차단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신규서비스를 위한 계정 부여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신규서비스를 위한 계정 부여 시 기존 스팸으로 인한 이용제한 이력유무를 확인하여 이력 존재 시 신규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확장자를 가진 이메일 파일 첨부물을 차단하거나 내용 속성에 따라 이메일 파일 첨부물을 필터링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움직임이나 그러한 움직임의 출처를 판단하기 위하여 송·수신 이메일 유통량을 능동적으로 모니터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손상된 네트워크 요소를 관리하고 스팸의 출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과정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다른 네트워크 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간 유기적 체계를 구축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에게 자체 보안 정책 및 절차를 공지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체 SMTP 서버가 오픈릴레이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배달실패 공지(Non-delivery notices-NDN)는 적법한 이메일에 한하여 발신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모든 도메인 네임, DNS 기록 및 해당 IP 주소 등록 기록(WHOIS, SWIP, RWHOIS)이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로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그들의 (공개적으로 라우팅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IP 주소가 정확한 최신 DNS 및 reverse DNS 레코드, WHOIS 및 SWIP 엔트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LAN 운영자는 RFC(Request for Comments)1918에 의한 사설망 주소만 이용하여야 하고, 공공망 주소를 이용하여서 는 안 된다.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기성 또는 조작된 헤더를 포함한 이메일 송신을 금 지한다. 헤더 추적 정보는 정확하고 RFC822, RFC2822를 포함한 관련 RFC와 일치해야 하며 참조 도메인 및 IP 주소는 정확한 최신 등록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록 5] 유·무선 통신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 ·이용계약체결 시 이용자 신원확인(본인확인) 강화 및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를 갱신하도록 노력한다.
- ·자체 스팸전송자 list(스팸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를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제한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약에 따라 경고, 이용정지, 서비스 해지 등 자율규제하고, 민원인이 요청하고 해당 민원건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일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 ·특수목적의 통신 서비스 제공 계약 시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불법적인 서비스를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 ·계약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은 회선이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재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특정 발신지에서 일정기준 이상으로 불완료호가 증가하거나 발신지를 은폐·조작할 경우 해당 통신호를 차단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에 의거한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 · 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년. 다만, 이중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는 6월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 ·전송자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발신번호 조작 등 기술적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사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사 통신이용자가 스팸을 대량전송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스팸 대량전송자 적발 시 경고, 이용정지, 서비스 해지 등 자율 규제하여야 한다.
- ·원래 번호부여 목적을 벗어나 전국 대표번호, 평생번호, 일반번호, 이동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성인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스팸전송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자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사 회선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불법 스팸 민원 접수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이관하는 등 불법 스팸전송자 적발 및 단속에 대한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팸을 많이 전송하는 특정 식별번호(prefix)에 대해 일괄차 단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동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4호 규정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 통신역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동전화(셀룰라) 및 개인휴대통신(PCS) 등과 같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동 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2. **"가입고객"**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취급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 3. "해지"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가입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서비스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4. "가입정보"라 함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가입고객으로부터 수집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금납부정보, 이동전화 일련번호 등의 기본정보(서비스 이용 중에 청구지 주소·요금제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과금정보"**라 함은 발신·착신번호, 통화시각, 기지국 정보, 사용도수 등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 및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하여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말한다.
- 6. **"가입고객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가입고객과 관련한 가입정보, 과금정보, 청구·수납 정보 등을 수집·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7.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해지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8. "광파일"이라 함은 문서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광디스크에 입력하여 저장한 것을 말한다.
- 9. "대리점"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리하여 신규고객 유치 및 기기변경 등을 포함한 고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10. "판매점"이라 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이동단말기를 공급받아 대리점을 위하여 판매 대행 및 가입자 유치 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입고객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 또는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과금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항목과 선택항 목으로 구분하여 당해 가입고객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필수항목
- 가. 서비스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등

- 나. 이용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 : 계좌이체의 경우 예금주명·은행명·계좌번호, 신용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명·카드종류·카드번호
- 2.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등 필수항목 이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고객이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가입정보의 이용 및 파기

제5조(가입정보의 이용 및 보관)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가입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가입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가입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 1.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의 경우 12개월
-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 3. 해지고객이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입고객 간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당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5.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계약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 유의 경우 12개월

③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근거, 보유목적, 보유기 간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가입고객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가입고객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당해정보를 별도의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관리하고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가입정보의 이용제한 및 파기)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따라 보관하는 가입정보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거나,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가입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4장 과금정보의 이용 및 파기

제7조(과금정보 이용 및 보관)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되는 과금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입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거나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자 하는 과금정보의 항목
- 2. 과금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3. 과금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과금정보가 생성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금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 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경우 12개월
- 2. 가입고객 또는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입고객 간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당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8조(과금정보의 이용제한 및 과기)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따라 보관하는 과금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거나,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과금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5장 구비서류의 보관 및 관리

제9조(구비서류의 보관·관리)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이 가입·해지 등을 위해 제출한 관련 구비서류(이하 "구비서류"라 한다)를 모두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비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보유할 수 있다.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보관하는 경우 사내 보안규정 등에 의해 보관장소를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등 접근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인가된 자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보관하는 구비서류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구비서류를 광파일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광파일에 대한 보관·관리에 대해서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10조(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이 구비서류 및 이의 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관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에 의한 가입·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자의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고객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2. 고객정보의 출력 또는 저장을 금지하는 조치
- 3. 그 밖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대리점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의 고객정보 관리·감독에 관한 이행 지침(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⑥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성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고객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보관, 이용·파기 등을 말한다) 함에 있어서 당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5-18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 또는 전산시스템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관리 현황의 제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비서류의 수거, 보관, 파기 등 관리 현황
- 2. 가입·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등 관리 현황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현황
- 4. 대리점 및 판매점 관리·감독(교육 실시 포함) 이행 현황
- 5.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 위탁 및 제3자 제공 현황
- 6.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행 현황

제14조(멤버쉽카드 제휴사에 대한 조치 의무)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멤버쉽카드 발급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당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휴사에 대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내 고객 개인정보 관리지침 등의 제정)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객 개인정보 관리지침' 등 사내 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0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 전의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 지침'은 폐지한다.

# [참고 2]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자침 中)>

구 분		분	세 부 조 치 사 항
	1.1.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1.1.1. 정보보호조직의 구성	▶ 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담당자로 구성된 정보보 호조직을 운영
		1.1.2.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
		1.1.3. 정보보호조직 구성원의 역할	<ul> <li>▶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와 조직을 총괄 지휘</li> <li>▶ 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li> <li>▶ 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분야별 실무를 담당</li> </ul>
		1.2.1. 정보보호방침의 수립·이행	▶ 정보보호 목표, 범위, 책임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방침(policy) 수립 ▶ 최고경영층(임원급 이상)의 승인
	1.2. 정보보호 계획 등의 수립 및 관리	1.2.2. 정보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이행	<ul> <li>▶ 정보보호방침을 토대로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정보 보호 실행계획을 수립</li> <li>▶ 최고경영층이 실행계획을 승인하고 정보보호책임자가 추진 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li> </ul>
1. 관리적 보호조치		1.2.3. 정보보호 실무지침의 마련·준수	<ul> <li>▶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보호 실무지침을 마련</li> <li>▶ 정보보호책임자가 실무지침을 승인하고 관련 법·제도, 설비의 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 관리</li> </ul>
	1.3. 인적 보안	1.3.1. 내부인력 보안	<ul> <li>▶ 임직원의 전보 또는 퇴직 시 즉시 관련 계정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거</li> <li>▶ 임직원에게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정보보호 실천수칙 보급 등)를 실시</li> <li>▶ 정보보호조직의 구성원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보호교육 실시</li> </ul>
		1.3.2. 외부인력 보안	▶ 자사 직원이 아닌 자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보안서약을 징구
		1.3.3. 위탁운영 보안	▶ 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보안계약서 또는 서비스준수협약 등에 '정보보호에 관한 위탁업체의 책임범위', '위탁업무 중단에 따른 비상대책'등을 반영
	1.4. 이용자 보호	1.4.1. 정보보호 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예·경보, 보안취약점, 계정·비밀번호 관리 방안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대응체계(보고 및 조치 체계), 대응 방법 및 절차, 복구 방법 및 절차,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시행
	1.6. 정보보호 조치 점검	1.6.1. 보호조치의 자체 점검	▶ 정보보호관리자는 매년 동 지침 및 정보보호실무지침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
	1.7. 정보자산 관리	1.7.1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현황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를 마련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관리 ▶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목록(용도 및 위치 등 포함) 작성·관리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2.1. 네트워크 보안	2.1.1. 트래픽 모니터링	▶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주요노드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링
		2.1.2. 무선서비스 보안	▶ 무선랜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인증, 데 이터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
		2.1.3.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 외부망과 연계되는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 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
		2.2.1. 웹서버 보안	▶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는 단독서버로 운영하고 DMZ에 설치
		2.2.2. DNS서버 보안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2.2.3. DHCP서버 보안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 IP 할당 상황 등에 대한 로그기록 유지·관리
		2.2.4. DB서버 보안	▶ 내부망에 설치 ▶ 외부망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2. 기 술	2.2. 정보통신 설비 보안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 ACL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
적 보 호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의 정상 작동 여 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호 조 치		2.2.7. 취약점 점검	▶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
·		2.2.8.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ul><li>▶ 인가된 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가 절차를 강화</li><li>▶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li></ul>
		2.2.9.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단, 설정 가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때는 설정 가능한 최대의 자리수로 설정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2.2.10. 로그 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관리(정보보호시스템은 3개월)
		2.2.11. 보안패치 관리	▶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하고 적용 ▶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기록·관리
		2.2.12. 백업 및 복구	▶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 백업 담당자, 백업 및 복구 방법·절차·주기 등을 기록·관리
3. 물 리	3.1. 출입 및 접근 보안	3.1.1. 정보통신시설의 출입·접근 통제	▶ 비인가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1개월 이상 유지·보관
적 보 호 조 치	3.2. 부대설비 및 시설 운영·관리	3.2.1. 백업설비 및 시설 설치·운영	▶ 주요정보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백업설비 및 시설을 설치· 운영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안내서·해설서』 시리즈 》

인타병주 유편하고 및 이D기반 #FID 교도 적용 안내서 무선인터 병점 109.8 17기업개발자 1356#관대적인 DORRS 위한 비료에 기발 안내서 1P점 109.12 17시급관리자 1P점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분류	안내서·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합니다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IT시스템관리자	중급
전형 의원에 바이라드로 및 아이기만 바이라드로 역용 안내서 무인인터넷됨 '09.12 '17(2)개발사 12(3)개의 IPV6 적용 안내서 의터넷로 '1961 12 '17(2)개발사 2인터넷로 '19.12 '17(2)개발사 2인터넷로 '19.13 '17(2)개발사 2인터넷로 '19.14 '17(2)개발사 2인터넷로 '19.15	이터네	인터넷주소분쟁해결 안내서	도메인팀		일반	초급
현 타	진흥	모바일 RFID코드 및 OID기반 RFID코드 적용 안내서	무선인터넷팀	'09.8	IT기업개발자	중급
인타넷운리템   199.2   인타인유관제자   인타넷운리템   199.2   인타인유관제자   인타넷운리템   199.2   인타   199.5   인타넷운리템   199.5   인타   199.5   인타넷운리템   199.5   인타   199.5   인타넷운리템   199.5   인타   199.5   인타   199.5		13.56MHz대역의 OID적용을 위한 미들웨어 개발 안내서	무선인터넷팀	'09.12	IT기업개발자	중급
환성화 본인확인제 만화 안내서 인터넷로리를 '09. 일반 '10.1   기시스템관리자 '10.1   기시스템관		공공기관 IPv6 적용 안내서	IP팀	'08.12	IT시스템관리자	중급
BcN주요장비병 정보호호 안내서   인터넷서비스보		본인확인제 안내서	인터넷윤리팀	'09.2	일반,업 <del>무</del> 관계자	중급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안내서 영보보호관리에 이용되고 안내서 영보 안내서 영보보호 안내서 영보보호 안내서 영보보호 안내서 영보보호 안내서 영보보호된 안내서 영보보호된 안내서 영보보호된 안내서 영보보호된 안내서 영보보호된 안내서 영보안 다내어 영보안내어 어어당이나나는 항상 안내어 영보안내어 영보안내어 전상으로 한 115 열시내 보안 강화 안내어 기업보안관리템 '08.17' IT시스템관리자 전상으로 한 115 열시내 영보보호 안전진단 액션에 기업보안관리템 '10.1 얼마난 10.11' 얼마나 10.11' 얼마난 10.11' 얼마나 10.11' 얼	활성화	본인확인제 만화 안내서	인터넷윤리팀	'09.	일반	초급
해서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10.1   11시스템관리자   11시스템 PURD   11시스템		BcN주요장비별 정보보호 안내서			IT시스템관리자	중급
정보보호		침해사고 분석절차 안내서	해킹대응팀	'10.1	IT시스템관리자	고급
정보보호 시스템 관심 보안 안내서 해킹대응팀 '08.10' 10.1' 일반 : 10.1' 20 전구계자 : 10.1' 20 전구관계자 : 10 전구관계계 : 10 전구관계자 : 10 전무관계자 : 10 전구관계자 : 10 전계자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지스템 기상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안내서	웹보안지원팀	'10.1	IT시스템관리자	고급
지스템 관련 보안 인내서 행정대응팀 (10.1 의반 10.1 의반 10.1 기업무관계자 10.1 기업정보호 인내서 WebKnight 로그 본적 안내서 ModScoutily를 활용한 아파치 웹서비 보안 강화 안내서 웹보안지원팀 '09.6 기시스템관리자 보안서비구축 안내서 개인정보보호팀 '09.12 일반,업무관계자 10.1 기업정보호 관계계 기업보안관리팀 '09.12 일반,업무관계자 10.1 기업보안관리팀 '09.12 일반,업무관계자 10.1 기업보안관리팀 '09.12 일반,업무관계자 10.1 업무관계자 10.1 일반 10.1 입다 10.1 일반 10.1 입다 10.1 입	2) 11 11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				
### ### #############################	시스템	무선랜 보안 안내서	해킹대응팀		일반	중급
WebKnight 로그 분석 안내서   ModSecurity를 활용한 아파치 웹서비 보안 강화 안내서   개인정보보호팀 '08.7   IT시스템관리자 '경보호 '0공'   기업보안관리팀 '08.17   IT시스템관리자 '0공'   기업보안관리팀 '08.17   IT시스템관리자 '08'   기업보호 한전진단 해설서   기업보안관리팀 '09.12   일반,업무관계자 '19'   경보호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팀 '10.1   업무관계자 '10'   전보호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팀 '10.1   업무관계자 '10'   건무관계자 '10'   건보호   건대계 '10'   건무관계자 '10'   건무관계자 '10'   건보호   건대계 '10'   건무관계자 '10		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축/운영 안내서	상황관제팀	'07.9	업무관계자	중급
ModSecurity를 활용한 아파치 웹서비 보안 강화 안내서 기인정보보호팀 '08.7   IT시스템관리자 '경보보호   '08.7   IT시스템관리자 '경보보호   '09.12   일반,업무관계자 '19.84   '09.12   '09.14   '09.14   '09.12   '09.14   '09.12   '09.14		WebKnight를활용한 IIS 웹서버 보안 강화 안내서				
현보호   1년 안성 경기인증 안내서   1년 안전 경기인 오반 안전진단 해설서   1년 안전 간단리템   1년		WebKnight 로그 분석 안내서	 웹보안지원팀	'09.6	IT시스템관리자	중급
현보보호   10년 명가인증 안내서   10년 만간라리를   108.7   17년 인근라지   10년 한 명기인증 안내서   10년 만간라리를   109.12   일반 업무관계자   10년 만간라리를   109.12   일반 업무관계자   10년 만간라리를   108.4   10.1   10.1   10년 만간라리를   109.12   일반 로 한잔진단 업무 안내서   10년 만간라리를   10.1   10년 만간다로 만난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로 만난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로 만난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로 만난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로 만난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인되기   10년 만간다시   10년 만간다로 만난다시   10년 만간다로 만난다스 만난다스 만난다스 만난다는 만난다는 만난다는 만난다는 만난다는 만난다는 만난다는 만난다는		ModSecurity를 활용한 아파치 웹서버 보안 강화 안내서				
정보보호 인증		보안서버구축 안내서	개인정보보호팀	'08.7	IT시스템관리자	중급
기업정보   정보보 한전진단 업무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템 '10.1 업무관계자 '10 전보관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템 '10.1 업무관계자 '10 전보관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템 '10.1 업무관계자 '10 전보보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템 '10.1 일반 '10.1	정보보호 인증	T보안성 평가·인증 안내서	-	'09.12		초급
보호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템 '10.1 업무관계자 경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템 '09.12 일반 '3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위합보호관리체계 안내서 유합보호R&D팀 '10.1 일반 '10.1 의반 '10.1	기업정보	정보보호 안전진단 해설서	기업보안관리팀		업무관계자	초급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10.1 일반 의한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10.1 일반 의한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7.12/ 10.1 일반 의한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의보호 본호 인구의를 만내서 유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의한 보호 인구의를 및 기길이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의한 인구의를 및 기길이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의한 인구의를 및 기길이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호전책 수립 기준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7 IT기업개발자 의원 인구의를 위한 보호전책 수립 기준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7 IT기업개발자 의원 인구의를 위한 보호전책 수립 기준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9 일반 의원 인구의를 위한 보호전체 이용 안내서 유합보호R&D팀 '09 일반 의원 인구의를 위한 인구의를 위한 인구의를 위한 인구의를 위한 인구의를 위한 인구의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하실서 기인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의팀 기능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하실서 기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의팀 기능적관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하실서 기인정보보호기 '08.11 IT기업 업무관계자 의팀 기능적관리적 보호조치 권고 하실서 기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기업 기업 기업 인구관계자 의료 기업 인공 안내서 기업 기업 인공 인구 인계자 기업 기업 인공 인내서 기업 기업 인공 인구 인계자 기업 기업 인공 인구 인계자 기업 기업 기업 인공 인구 인계자 기업 기업 기업 인공 인구 인계자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인공 인대서 이용자권 인보호 팀 '09.8 업무관계자 기업의 개인정보호 당인되기 이용자권 인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 인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09.1 '09.1 업무관계자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 인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09.1 '09.1 업무관계자 '09.1	보호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팀	'10.1	업무관계자	초급
함호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12/ '10.1 일반 '10.1 일반 '10.1 이용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10.1 이용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10.1 이용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10.1 이용합보호R&D팀 '05. 일반 '10.1 이용한보호 안내서 '10.1 이용합보호R&D팀 '05. 일반 '10.1 이용한보호 안내서 '10.1 이용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10.1 입 및 기관의 IT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10.1 당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10.1 입 및 기관의 IT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10.1 당보호R&D팀 '09 일반 '10.1 이용한보호 자장과 관리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10.1 당보호R&D팀 '09 일반 '10.1 이용한보호R&D팀 '09 일반 '10.1 이용한보호R&D팀 '09 일반 '10.1 이용자관리자 '10.1 '1		정보보호관리체계 안내서	기업보안관리팀	'09.12	일반	초급
전구서비 Pv6운영보안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10.11 일반' '10.14 Pv6운영보안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10.14 Pv6운영보안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10.15 Pv6분양기술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10.15 Pv6분양기술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10.15 Pv6분양기술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10.15 Pv6분양기술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10.15 Pv6분양기술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10.15 Pv6분양기술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9 일반 '10.15 Pv6분명 P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팀		일반	초급
인규처비 수		암호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팀			중급
지원보호 의이트로 보안기술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 양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 영합보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 영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9 일반 :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9 일반 :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9 일반 : 의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9 IT시스템관리자 : 의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의팀 '108.11 업무관계자 : 의사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 의사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10.11 업무관계자 : 의사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 의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대한자, 관리자 : 의사정보보호를 안내서 기안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 의사정보보호를 안내서 기안정보보호를 '09.8 업무관계자 : 의사장 및 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1 업무관계자 : 의사장 및 대리,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1 업무관계자 : 의사장 및 대리,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1 업무관계자 : 의사장 및 대리 및 대		Pv6운영보안 안내서	융합보호R&D팀	'06.12	IT시스템관리자	중급
정보보호 임이브로 보안기술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함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함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함께 한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함께 한 알고리즘 및 기관의 IT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함께 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9 일반 IT시스템관리자 함께 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 IT시스템관리자 함께 가인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함께 가인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함께 가장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함께 가장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1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100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100정보보호 달인되기 '09.7 업무관계자 함께 가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의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0명의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IPv6보안기술 안내서	융합보호R&D팀	'05.	일반	초급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연기업 및 기관의 IT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7   IT기업개발자   연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9   일반   원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영합보호R&D팀 '06   IT시스템관리자   역임   기업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역임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역임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10.11   업무관계자   연임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10.11   대기업 '11.11   업무관계자   연임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기 '10.11   대기업 '개발자', 관리자'   관리자' '10.11   기업지 '11.11   건강된지, 관리자' '11.11   건강된지,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의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건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1   업무관계자 '11.11   건강관계자 '11.11   건강관계차 '		와이브로 보안기술 안내서	융합보호R&D팀	'06.8	IT시스템관리자	중급
전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9 일반 원세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 IT시스템관리자 현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현임 기술적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현임 기술적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1/ '10.1 업무관계자 현임 기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10 전체 기업정보보호기 '09.11 기업 기발자, 관리자 기업적보보호기 '09.11 기업 기발자, 관리자 기업적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10 전기 기업적보보호 달인되기 '09.8 업무관계자 '10 전기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09.8 업무관계자 '10 전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10 전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 전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 전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10 전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팀	'07	IT시스템관리자	중급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   IT시스템관리자 : 기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1   업무관계자 : 회팀   웹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무이N 2.0 도입 안내서   가인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 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업의 개인정보 및 기업의 개인정		(기업 및 기관의 IT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융합보호R&D팀	'07	IT기업개발자	중급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응합보호R&D팀 '06   IT시스템관리자 : 기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1   업무관계자 : 회팀   웹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무이N 2.0 도입 안내서   가인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 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업의 개인정보 및 기업의 개인정		(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이용 안내서	융합보호R&D팀	'09	일반	초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9 업무관계자 회림 '08.12 업무관계자 회림 '08.12 업무관계자 회림 '08.12 업무관계자 회림 '08.12 업무관계자 회림 '08.11 업무관계자 회림 '10.11 업무관계자 회림 '10.11 업무관계자 회림 '10.11 업무관계자 기안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대기업 개발자, 관리자 '10.11 대기업 개발자, 관리자 기안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기안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기안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의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1 업무관계자 '10.11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1 업무관계자 '10.11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에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06		중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2 업무관계자 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1/ 업무관계자 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기업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의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등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의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등			개인정보보호기			중급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8.11/ 업무관계자 함께 가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IT기업 개발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획팀	'08.12	업무관계자	중급
개인정보 웹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기업 개발자, 관리자' 등 I-PIN 2.0 도입 안내서 기업정보보호기 '09.7 업무관계자 등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등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정보보호기 획팀		업무관계자	중급
1-PIN 2.0 도입 안내저   술팀   09.7 입구관계자   3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3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3	개인정보	웹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기	'09.11	개발자,	중급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지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I-PIN 2.0 도입 안내서		'09.7	업무관계자	중급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이용자권익보호팀	'09.8	업무관계자	중급
OHI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이용자권익보호팀	'09.1	업무관계자	중급
스팸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스팸대응팀 '08.9 일만', 업무관계자	스팸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스팸대응팀	'08.9	일반, 업 <del>무관</del> 계자	초급
이걸	인력 양성	지식정보보안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세부시행 안내서	KISA아카데미팀	'09.		초급
총40종           ○ 본 안내서·해설서는 한국인터넷 홈페이지(www kisa or kr)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						

<sup>○</sup> 본 안내서·해설서는 한국인터넷 홈페이지(www.kisa.or.kr)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2010년 1월 인쇄 2010년 1월 발행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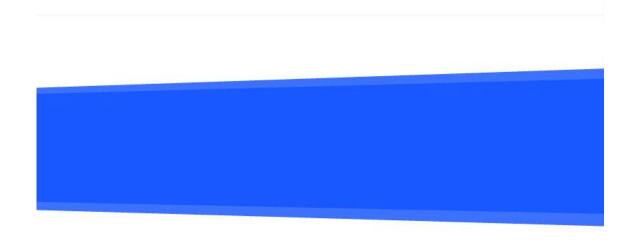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Tel: (02) 750-1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02) 405-5118

인쇄처:

<비매품>

■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 터넷진흥원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138-95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Tel. 405-5118 Fax. 405-5119 www.kisa.or.kr